



전용식 연구위원

요약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피해자들의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인데 반해,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관계비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임. 치료관계비에 사고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 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의 원인으로 보험수가의 차이와 합의금(혹은 위자료)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 외에도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도 원인일 수 있음
 - 자동차보험에서 과잉치료의 원인으로 보험수가의 차이와 합의금 등 보상금이 선행연구에서 분석됨¹⁾
 - 한편 치료관계비 규정은 과실상계한 치료관계비 금액이 실제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실제 치료관계비를 지급하지만 대물배상은 원칙적으로 과실상계 보험금을 지급함
 - 예를 들어 과실비율 70%인 상해등급이 12~14급인 경상환자는 70%의 대물배상금(차량 수리비)을 보상받지 못하는 반면, 대인배상에서는 실제 치료관계비가 과실상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치료관계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상계된 대물배상금을 치료관계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음
 - 특히 대물배상은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1999년 1조 원 수준에서 2019년 3조 5천억 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개인용자동차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2% 증가에 그침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 차이가 피해자의 과잉치료를 유인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아질수록 대인배상 청구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하반기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가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차량과 차량의 사고 15,418건 가운데 대인배상 건수와 피해자의 치료 현황을 상해등급 12~14급, 그리고 과실비율에 따라 분석함²⁾

1) 권창익 외(2007), 「보험진료비 심사일원화의 사회·경제적 효과」, 『보건과 사회과학』, pp.105~125; 전용식(2020), 「자동차보험 부상 합의금 지급사례 분석」,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3호, pp 141~170

2) 대물배상 건수 대비 대인배상 건수 비율은 Cummins and Tennyson(1996), Hyot et al.(2006) 등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도덕적 해이 규모 추정에 활용함

-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0%(무과실), 1~30%, 31~70%, 71~99%의 네 그룹으로 구분함(〈표 1〉 참조)
- 무과실 피해자의 29%가 대인사고 접수를 한 반면, 쌍방과실 사고에서 피해자들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30%인 그룹에서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50.4%,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은 32.0%, 과실비율이 71~99%인 그룹의 대인사고 접수 비중은 36.6%임

〈표 1〉 경상환자의 과실비율별 치료 및 대인배상 청구 현황

내용		피해자 과실비율				
		무과실	1~30%	31~70%	71~99%	합계/평균
분석대상 사고 건수		12,350	1,527	751	790	15,418
상해등급 12~14급	대인배상 청구 건수 비중(%)	29.0	50.4	32.0	36.6	31.6
	평균 치료비(만 원)	73.2	78.8	76.8	55.5	73.2
	평균 치료일수(일)	9.7	9.0	9.7	6.2	9.4
	평균 입원일수(일)	2.5	3.8	4.1	2.9	2.8
	종합병원 비중(%)	17.9	19.4	20.8	16.3	18.2
	상급종합병원 비중(%)	2.2	2.7	2.5	1.4	2.2
	한의원/한방병원 비중(%)	33.3	32.4	24.6	18.7	31.9
	평균 합의금(만 원)	155.0	147.0	99.0	53.5	145.0
	평균 대물배상 금액(만 원)	187.0	184.0	134.0	54.0	176.0

주: 운전자의 차량이 외제차인 경우는 제외함

자료: 2016년 하반기 국내 대형손해보험회사의 보상 자료

- 과실비율이 1~70%인 쌍방과실 피해자들은 무과실 피해자들에 비해 입원을 오래하거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치료 비중이 높기 때문에, 평균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입원일수는 과실비율이 70%까지는 2.5일에서 3.8일, 4.1일로 높아지고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중도 무과실 피해자의 17.9%, 2.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과실비율이 71% 이상인 경우에는 치료일수, 입원일수 등의 감소로 평균 치료비가 55.5만 원으로 감소하지만 평균 입원일수는 2.9일로 무과실 피해자의 2.5일에 비해 높아 사고책임에 비해 과도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합의금은 대물배상과 같이 과실상계 후 지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합의금은 감소함
- 자동차보험 치료관계비 규정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사고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피해자들은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보임
 - 대인 및 대물배상 전체 보험금을 극대화하는 것이 피해자의 이해관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필요하더라도 치료를 더 받아 치료관계비를 더 받는 것이 합의금도 늘릴 수 있어 피해자의 보상을 극대화하는 선택임
 - 이러한 유인은 과실비율이 1~30% 미만인 그룹에서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전체 보험금은 409.8만 원으로 무

과실 피해자의 415.2만 원과 유사하고 과실비율이 31~70%인 그룹의 전체 보험금은 309.8만 원으로 무과실 피해자의 75%임

- 과실비율이 70% 이상인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은 무과실 피해자의 35%인데 비해 치료비는 무과실 피해자의 7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치료관계비를 받은 것으로 보임

○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피해자 보호 취지는 유지하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 II에서는 원칙적인 과실상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함

- 법원의 판결에서는 치료비 과실상계를 판시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과실상계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치료관계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에서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함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과잉치료 등 도덕적 해이를 유인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대인배상 II 과실상계로 치료관계비가 줄어들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음